경 제 혁 신

산업통상자원부 **보 도 자 료**
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2017년 4월 21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4.20.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4. 20.(목)	담당부서	생활제품안전과
담당과장	안성호 과장(043-870-5450)	담 당 자	김다연 주무관(043-870-5458)

가구 · 자동차용 워셔액 등 안전기준 상반기중 개정완료

-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제품안전심의위원회(4.20)에서 심의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정동희)은 '17. 4. 20.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**제품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**하여 가구·자동차용 워셔액 등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심의했다.

□ 이번에 안전기준이 개정될 가구와 워셔액 등은 작년에 소비자 사고·위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어 왔던 제품으로서, 이번 안전기준 개정은 이러한 우려에 대응해 **소비자 안전을 강화**하기 위한 조치다.

○ **가구**는 작년에 **서랍장 전도**로 인해 어린이 등의 상해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, 당시 국내에 전도관련 기준이 미비해 미국 기준을 **예비 안전기준**으로 적용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후 **결함보상(리콜)조치를 시행**한 바 있다.

○ **워셔액**은 차 유리에 사용시 **메탄올 성분의 차내 흡입 가능성**이 제기되면서 위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있었다.

□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소비자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**작년 하반기**부터 **안전기준 개정**에 대해 여러 차례 **이해당사자 의견 수렴**을 거쳐 입안예고를 진행했던 바, 이번에 개정되는 안전기준의 **주요 사항**은 다음과 같다.

○ 가구 중 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에 대해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하여 23kg*의 하중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**안정성 안전요건을 추가**했고,

*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하여 美 ASTM 규격을 인용

○ 자동차용 워셔액의 경우 **메탄올 함량을 0.6% 이하로 설정**했다.

○ 창문 블라인드의 경우 줄에 의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**블라인드의 줄이 바닥에서 80cm 이상 위치**하도록 규정했다.

* 다만, 줄 고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줄 끝단의 길이가 바닥에서 120cm 이상 위치하도록 규정

□ 동 개정안은 **향후 규제심사**를 거쳐 올해 **상반기 중 고시**할 예정이며, 고시 이후 **유예기간을 부여**한 후 적용한다.

□ 개정 기준이 적용되면 가구 전도사고 및 블라인드 줄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등 소비자 안전이 보다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붙임. 안전기준 개정 주요 내용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김다연 주무관(043-870-545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안전기준 주요 개정 내용

□ 가구

구분	현행 기준		개정 기준
전도시험 (적용 하중)	-	▶	전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요건 신설 (가정·어린이용 23kg, 사무용 10kg)

□ 자동차용 워셔액

구분	현행 기준		개정 기준
화학적 요건	-	▶	에탄[illegible]올 주 성분으로 한 [illegible]셔액 [illegible] (메탄[illegible].6% 이하)

□ 창문 블라인드

구분	현행 기준		개정 기준
줄 길이	-	▶	바닥에서 80cm 이상
줄 고정장치	줄을 벽에 고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		줄 끝단의 길이(바닥에서 120cm 이상) 규정 추가